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73 발의연월일: 2023. 9. 1.

발 의 자: 구자근 · 김희곤 · 최영희

최춘식 • 이인선 • 권명호

박대수 · 박성민 · 조해진

강기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 대상 항목에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요금은 누락되어 있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주민이 직접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임.

이에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 및 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6호 중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으로 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6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				
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u>전</u>				

<u>기요금</u>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	-의 감	·접지원]	

스요금-----

-----전기요금, 도시가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